

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응시원서 접수

❶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
- 응시자는 시험장 입장 시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응시자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.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,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.
- 신분증 미소지자 및 대리 응시가 의심되는 자는 「본인여부 확인 동의서」를 작성하고 지문날인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, 반드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임시확인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※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정
- 응시표에는 인쇄 당시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, 메모,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금합니다.
-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- 문제지가 시험실에 반입(시험시작 5분 전)된 후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 라벨을 손상하거나, 들춰보는 행위를 할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
- 시험실 내에 시계가 제공되지 않으니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무선이어폰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MP3플레이어,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, 위 기기를 시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- 답안 표기 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의 잘못된 표기는 답안 판독 불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는 사용이 허용되나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이 금지됩니다.
- 시험 시간 중 컨닝페이퍼를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.
-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「변호사시험법」 제6조에 따른 응시자격자 및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
② 현장접수나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나요?

- 인터넷 원서접수는 ① 각종 시험에서의 인터넷 원서접수의 보편화 추세 ② 응시자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효율성 제고 ③ 시험행정 전산화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현장접수와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아울러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

③ 소명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?

- 법무부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「법조윤리과목 이수자 명단」을 제출 받습니다(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).
- 이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리 제출한 응시자격 소명서류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, 응시자는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응시원서 접수 시 「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갈음」에 체크하면 됩니다.
- 갈음에 동의하지 않고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「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」를 소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(2023. 6. 30. 소인분까지 유효)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소명서류 제출기간: 2023. 6. 26.(월) 09:00~6. 30.(금) 18:00

※ 유의사항: 「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」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

④ 시험장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- 응시원서 접수 순서와는 무관하게 1지망 → 2지망순으로 배정되며 시험장별 수용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아 2지망에서도 시험장을 배정받지 못한 수험생은 서울지역 시험장에 무작위 배정됩니다.

⑤ 원서접수를 완료하였음에도 응시표가 출력되지 않고 접수확인증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접수확인증만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?

- 아닙니다. 접수확인증은 원서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,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「응시표」를 출력하여야 합니다.
- 응시표의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원서 접수순서와 무관하게 별도의 전산화 과정을 거쳐 부여됩니다.
- 따라서,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수험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으며, 이 기간 동안 응시자는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응시원서 접수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⑥ 응시표 출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
- 2023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응시표는 2023년 7월 14일(금) 09: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(<http://moj.uwayapply.com>)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
⑦ 응시표를 출력하였습니다. 응시표에 기재된 수험번호, 좌석번호는 무슨 의미이고, 합격자 확인은 어떤 번호로 하나요?

- 수험번호는 해당 시험에서 응시자를 특정하는 고유번호입니다. 따라서 응시자는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 시 수험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좌석번호는 시험장과 그 시험장에서의 좌석번호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'연세대 광복관 025'로 기재된 경우 응시자는 시험 당일 '연세대학교 광복관' 시험장에 가서 '025'번이 속한 시험실을 찾아 해당 좌석에 착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.

※ 좌석번호별 시험실 배치는 시험 당일 시험장 현관에 부착

- 시험의 합격 여부는 수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